



(사)한국독성학회 독성전문가인증시험 운영규정

2005. 1.	제정
2010. 1.	개정
2012. 9.	개정
2015. 11.	개정
2017. 11. 14	개정
2018. 11. 8	개정
2019. 11. 4	개정
2021. 2. 19	개정
2022. 10. 7	개정
2024. 2. 21	개정

(사)한국독성학회정관 제4조(사업)의 제4항 “독성학 교육 및 시험을 통한 독성학자 인증”, 교육인증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독성전문가인증)의 제1항을 위해 독성전문가인증시험에 관한 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 1조 (용어의 정의)

1. “독성전문가”라 함은 한국독성학회 교육인증위원회에서 소정의 자격을 심사하여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독성전문가인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이라 함은 교육인증위원회주관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전문시험을 말한다.
3. “독성전문가시험응시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라 함은 독성전문가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독성전문가인증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4. “독성관련업무”라 함은 약학, 수의학, 보건학, 의학, 식품학, 생명과학, 화학 등 독성학 관련 분야에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련된 학술적 또는 연구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 2조 (응시자격)

독성전문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는 아래 각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정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한한다.

1. 독성학관련 분야 (약학, 수의학, 보건학, 의학, 식품학, 생명과학, 화학 등)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동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업무 수행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동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업무 수행경력이 8년 이상인 자
2. 교육인증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응시자격 규정(별표1)에 해당하는 자
3. 시험 응시 지원 당해년도와 전년도를 포함한 2년 이상 한국독성학회 회비를 완납한 자

제 3조 (응시자격의 심사)

1. 교육인증위원회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응시자격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교육인증위원 중 3인 이상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응시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2. 교육인증위원회 위원장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응시원서(별표2) 및 응시원서에 명시된 소정의 자료를 제출 받아 그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3. 응시자격은 실무위원회 구성원 중 2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부여된다.

제 4조 (시험의 응시)

1.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독성전문가인증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별표2) 및 소정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교육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교육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인증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자격의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응시원서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조 (인증시험 실시)

1. 교육인증위원회는 매년 1회 전문가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협의에 의해 합의된 경우에는 그 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교육인증위원회 위원장은 시험의 사전고지, 시험실시, 감독, 시험관리 (시험문제의 선정, 배포, 수거 및 채점 등) 및 그 결과의 통보에 이르기까지 시험의 전반적 과정을 정한다.
3. 교육인증위원회 위원장은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고, 전문가명부에 등재하며, 한국독성학회회장과 공동명의로 인증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4. 합격 기준은 시험의 난이도와 지원자 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인증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6조 (재인증)

1. 교육인증위원회는 최초 인증 후 5년 마다 독성전문가에 대한 재인증을 실시한다.
2. 교육인증위원회는 이를 위하여 독성전문가 재인증자격에 관한 규정(별표1)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재인증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제 7조 (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 후 시행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별표 1) 응시자격 및 재인증 자격에 관한 규정

- ① 응시자의 자격은 응시원서 제출시 30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30점 취득 기간은 최근 5년간의 누적으로 정한다.
- ② 재인증 자격은 5년간 70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 ③ 정관에 명시된 학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할 시에 2회 재인증 이후 영구 인증으로 간주한다.
- ④ 포스터 및 논문 게재, GLP시험보고서와 관련된 점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점수	내용
개인회원	5점	본 학회 정회원 (필수)
포스터발표	1~2점/편	1. 본 학회 초록 주저자/교신저자 (2점/편)
		2. 독성학 관련 국제학회 초록 주저자/교신저자 (1점/편)
논문게재	2~8점/편	1. Toxicological Research 주저자/교신저자 (8점/편), 공동저자 (4점/편)
		2. 독성학관련 SCIE 이상 주저자/교신저자 (6점/편), 공동저자 (3점/편)
		3. 독성학관련 기타 학술지 주저자/교신저자 (4점/편), 공동저자 (2점/편)
GLP 시험 수행 경력	8점/편	GLP 시험관련 시험책임자, 운영 책임자, 주요 참여자 * 이는 시험담당자 및 운영책임자의 서명날인이 된 GLP 최종 보고서 상에 기재사항으로 판단하며, 증명자료로 pdf 파일을 첨부함.
학회참석	3점/회	본 학회 참석 본 학회주관 국제학회
교육참석	5점/회	본 학회 교육 참석 (워크샵 혹은 독성학 전문교육과정) * 재인증의 경우 5년간 3회 이상의 교육 참석 필수
학술봉사	3~6점	전문가 신규문제 입고 (3점/10문제, 20문제/년) * 재인증 경우에만 해당
	1점/편	Toxicological Research 논문 심사 * 재인증 경우에만 해당

(별표 2)

독성전문가인증시험 응시원서

성명				(최근 2년내 사진 첨부)
생년월일				
전화		이동전화		
팩스		E-mail		
소속		직책		
우편물 수령지				
학력	0000년 00월 00대학교 00대학 학사(B.Sc.) 졸 0000년 00월 00대학교 대학원 00학과 석사(M.Sc.) 졸, 지도교수: 0000년 00월 00대학교 대학원 00학과 박사(Ph.D.) 졸, 지도교수:			
경력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소속, 직책)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소속, 직책) 0000년 00월 - 현재 (소속, 직책)			
독성전문가 지원 사유	과거 및 미래의 활동 영역 및 계획, 독성분야 활동에 대한 의지 등을 간략히 서술 *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소속기관정보	기관장 성명		기관장 연락처	
			대표기관 E-mail	

위의 사실은 틀림없음.

년 월 일

위 본인 :

(인)

- 첨부서류: (1) 응시자격(학사학위 취득 후 8년 경력,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경력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과 관련된 증빙자료 일체 :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부서명, 직책, 직무 명시)
(2) <독성전문가인증시험 운영기준>의 별표 1 “응시자격 및 재인증 자격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